

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4. 12. 23.>

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(제8조의5제1항 관련)

1. 신분증명서

-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
- 나. 「병역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역증
- 다.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
- 라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신분증
- 마. 「사관학교설치법」, 「육군3사관학교설치법」 및 「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」
따른 각 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신분증
- 바. 삭제 <2024. 12. 23.>
- 사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
- 아. 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
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중국 군
대 구성원의 신분증명서

2. 증명서나 서류

- 가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29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
- 나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
- 다. (1)부터 (3)까지의 사람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, 이 별표 제1호 및 제2
호 가목·나목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
이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 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증명서나 서류
 - (1) 사범경찰관리나 법 집행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호송하는 법 제24조제1항의 호
송대상자
 - (2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- (3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환자